2014년 12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12월18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성장친절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기청 시장상권과 조재연 과장(042-481-4559), 강병택 사무관(4563)
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김준범 팀장, 이훈구 과장(02-3703-2064)

중소기업청, 전통시장 보조금 부적정집행 25건 적발

- 부패척결추진단·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77개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
- 사업자선정 부적정·사업계획 임의변경·집행잔액 미반환 등 비리 적발
-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후, 국가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

□ **중소기업청**(청장 한정화)은 지난 10월부터 **부패척결추진단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**으로 최근 3년간('11~'13년)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77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,

○ **사업자선정 부적정 2건**(59억 원), **사업계획 임의변경**(미승인) **3건**(40억 원), **집행잔액 미반환 10건**(8억 원), **현대화시설**(주차장 등) **부실 운영 5건, 추진협의회 미구성 5건** 등을 적발하고,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

□ 주요 적발내용 및 시정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

○ **(사업자선정 부적정)** ① ○○시 A시장의 경우 '09~'11년 시장내 비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아케이트 공사의 사업자 선정 시

법령을 위반하여 평가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당해 소속 공무원, 새마을 부녀회장, 일반 상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, 동 평가위원들이 평가과정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객관적 점수가 낮은 업체에게 월등히 높은 주관적 점수를 주어 제일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음(총 계약금액 : 36억 5,500만 원)

⇒(**조치사항**) 공사계약 방식의 임의 변경 및 공사실적, 평가위원회 구성, 평가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,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경찰청에 수사의뢰('14. 11월)

② △△시 B시장의 경우 시장상인 편의제공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체 공사대비 특허적용 공사비 비중을 약 86%(수의계약 기준 85.72%)로 판정하여 수의계약 하였으나, 실제 특허내용과 관련 없는 자재대와 사석, 피복쌓기 등을 제외하면 특허적용부분 공사비 비중은 37.23% 정도로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자체가 아님(총 계약금액 : 22억 3,300만 원)

⇒(**조치사항**) 계약과정 등을 종합한 결과, 업무처리에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('14.12월)

○(**사업계획 임의변경**) □□시 C시장의 경우 주차장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(38억 9000만 원)을 충청남도와 지방중소기업청의 변경 승인 없이 다목적광장으로 무단 전용

⇒(**조치사항**) 충청남도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였음('12. 4월)
(**제도개선사항**) 무단 사업변경 시 1~4년간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하여 사업지침 개정('15. 1월)

○(**집행잔액 미반환**)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시·군·구(10개 전통시장)에서 8억 3,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

⇒ (**조치사항**) '15. 5월말까지 중소기업청에 집행잔액을 반환토록 조치
(**제도개선사항**) 미반환 시 향후 해당 시·군·구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배제하도록 사업지침 개정('15. 1월)

○ (**현대화시설 부실운영**) ① 위탁관리 주차장 등은 사용료 징수대상이나, 관련법*을 위반하여 ◈◈시 D시장 상인회에게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**무상으로 위탁관리**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 초래

⇒ (**조치사항**) 주차장 사용료 환수 조치,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 제정 경위 및 위탁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○○도에 감사 의뢰

* 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)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 감면

② ○○시 △구는 A시장에 □□카페(사업비 2억 3000만 원)를 설치하여 상인회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,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

- 또한, ▲▲시 E시장에 고객지원센터(사업비 30억 8,700만 원)를 건립하여 개소식('14.1월) 이후, 상인대학 1회 운영(4월) 외 운영실적 전무

⇒ (**조치사항**) 시설물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출 요구('15. 1월)
(**제도개선사항**) 매분기별 시설물 활용실적 제출의무화 및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배제토록 사업지침 개정('15. 1월)

○ (**추진협의회 미구성**)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아케이드·화장실 설치사업 등 일정 사업은 시·군·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, 5개 지자체에서 구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추진함

⇒ (**조치사항**) 중소기업청에서 해당 시·군·구에 "주의조치"('13.11월)
(**제도개선사항**)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에 "**추진위 구성·운영계획서**"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사업지침 개정('15. 1월)

□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, 향후 중소기업청은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국가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임

○ 또한,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지원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방안을 개선하고,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시·군·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임

※ 참고 :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

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

□ 목적

o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·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,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

□ 사업규모 : '14년 예산 1,388억원(광역발전특별회계, 생활기반계정)

□ 지원조건

o 매칭 : 국비 60%, 지방비 30%, 민간 10%(지자체 5%이내 자율 조정)

* 민간부담금 면제대상 : 진입로, 상·하수도, 공용화장실 및 공동전기·가스·소방시설, 고객지원센터, 고객휴게실, 상인교육공간,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, 공동물류창고, 다목적광장, 공설시장, 공동판매장

□ 지원대상

o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*을 보유한 곳

* 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, 민법상 법인 등

□ 지원내용

o 진입도로,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

o 시설물 개보수, 문화·편의시설 설치, 공설시장 지원 등

□ 추진절차

o 시장 상인회·조합·법인 : 시·군·구로 사업계획서 제출(매년 2월)

o 시·군·구 : 시·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(매년 3월)

o 시·도 : 실태조사, 지원시장 및 금액 확정, 예산(안) 중기청 제출(매년 3월)

o 중기청 : 대상 및 금액 최종확정 후 기재부로 예산(안) 제출(매년 5월)